

회칙 전문

우리는 문학을 사랑하는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학생회이다. 우리는 사랑과 고통에 연대하는 방법으로 문학 하기를 선택한 학생들이다. 우리는 함께 읽고 쓰고 만나고 나누며 더불어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되는 방법으로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꾸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로서 가장 아름다운 문학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 3월 12일 학생총회를 통해 회칙을 정한다.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학생회칙

- 2025년 03월 12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문예창작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문학의 성취는 문학의 과정까지 포함한다는 믿음 아래 자유로운 학문 활동과 아름다운 창작 활동을 위한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문예창작학과 안에 둔다.

제4조 (기구)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정·부학생회장, 집행부, 운영위원회를 두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여기서 회원이라 함은 정회원을 일컫는다.

01 본회의 정회원은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단, 본회의 회칙 위반 혹은 불법행위, 학칙 위반 등의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02 본회의 준회원은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휴학생, 졸업생으로 한다. 단, 직선제로 선출된 학생대표자가 휴학 또는 수료 상태에 놓일 경우 제반 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는다.

03 본회의 명예회원은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재직 중인 교수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 01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02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 계획 및 회비의 수익과 지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알 권리가 있다.
- 03 본 회의 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04 본 회의 회원은 학과 행사 참여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단, 학생회비 미납부자는 문예창작학과 학생회 행사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0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와 학생회비 납부 등 재정 부담의 의무를 지닌다.
- 02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회의 활동 전반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 (학교당국과의 관계)

- 01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둘 시 학교 당국과 교수까지 포함할 수 있다.
- 02 본 회의는 문예창작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학과장 및 명예회원과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제2장 학생총회

제9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0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권한)

- 01 학생총회는 본 회의 전반에 관련한 중대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02 학생총회는 회칙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권, 학생회장과 부회장 탄핵소추권, 학교 당국과의 이해충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의결권을 갖는다.
- 03 학생총회는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제12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학생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집행부 부장 중 학번이 앞서는 1인이 순차적으로 의장 직을 수행한다.

제13조 (소집)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01 정기총회는 매년 1학기 2회, 2학기 2회 개최하여 1년에 4회로 한다.

- 0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 2/3이상, 전체회원의 1/7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7일 이내에 소집한다.
- 03 학생총회의 소집은 학생회장이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결)

- 01 학생총회의 개최는 정회원의 1/5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1조 02의 경우는 정회원 1/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2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회 시행 일시로부터 3일 이내 전체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부학생회장

제15조 (학생회장의 지위)

- 01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02 학생회장은 부학생회장과 집행부를 임명하고, 학생총회 의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03 학생회장은 대내외적으로 학생회를 대표하며 그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관장한다.

제16조 (부학생회장의 지위)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임기)

정·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선출)

- 01 학생회장의 선출은 제7장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에 의한다.
- 02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19조 (자격)

학생회장은 4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 하고, 부학생회장은 2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전체 회원의 1/3 이상의 추천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 (업무 및 권한)

- 01 학생총회를 공고 소집할 권한을 지닌다.
- 02 집행부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 03 집행부의 각 부서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진다.
- 04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주관한다.

제21조 (자격 상실)

- 01 정·부학생회장이 중대한 과오를 범했거나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회원 1/4 이

상의 연서로 불신입안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02 학생총회에 상정된 불신입안은 1/3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통과 즉시 운영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때 집행부 부장 중 학번이 앞서는 1인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한다.

제4장 집행부

제22조 (지위)

본 회의 집행 기구이다.

제23조 (구성)

집행부는 총무부, 기획홍보부, 체육복지부로 구성하되, 학생회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4조 (임명)

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부서장과 차장, 부원들을 임명한다.

제25조 (업무)

01 각 부서는 학생회의 주요 업무를 집행한다.

02 각 부서는 학생회비를 집행한다.

03 각 부서는 학생회의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6조 (지위)

본 회의 의결기구이다.

제27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그리고 집행부 부장 및 학년별 과대표로 구성된다. 이때, 학년별 과대표는 신입학 시 호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매년 자체적으로 호선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28조 (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학생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집행부 부장 중 학번이 앞서는 1인이 순차적으로 위원장 직을 수행한다.

제29조 (소집)

01 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횟수는 학생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

다.

0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학생회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03 기타 본 회의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 (의결)

01 학생회비의 예·결산 및 심의권을 갖는다.

02 본 회의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03 집행부의 사업 계획서 및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04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05 각 부서의 사업 집행 과정을 관리 감독한다.

제31조 (선거업무)

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등과의 업무 협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학생회장의 선거를 관리·관장한다. 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등과의 업무 협의에 따라 학과 학생회장 선거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시에는 선거 업무를 제한한다.

제32조 (의결)

재적위원 1/2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33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학과 지원금 및 제반 보조금으로 한다.

제34조 (학생회비)

01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학생자치기구의 운영비는 학생회비로 조달된다.

02 매년 학생회의 연간 예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과 당해 연도의 학생회비로 구성된다.

03 학생회비는 재학 기간 중 한 번만 납부하며, 원활한 재정 확보를 위해 입학 시 또는 최초 등록 시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단, 편입학의 경우 남은 학기를 계상하여 납부한다.

04 학생회비 납부자는 학생회의 운영에 따라 납부 연도 행사 참여 시 또는 특수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05 학생회비 미납부자는 학생회의 운영 방침에 따라 학생회비로 집행된 사업에서의 본 회의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단, 학생회장은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예외를 둘 수 있다.

06 학생회비의 증액 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에 따른다.

07 학생회비의 5% 선에서 학생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별도의 회계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08 인문국제대 학생회비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따르되, 학생총회를 통해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예산편성)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별 예산편성안을 작성하고, 학생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제37조 (예산집행)

예산집행은 예산편성안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지출항목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내역을 기록한다.

제38조 (결산보고)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학생회장의 감사를 받고, 상·하반기 정기총회에서 전체 결산을 한다. 단, 운영위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 횟수와 시기를 별도로 결정한다. 감사 결과는 자보 또는 보고서 등의 방법으로 전체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7장 선거

제39조 (시기 및 임기)

01 학생회장 선거는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02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단, 전체 회원의 1/2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 (선거방법)

01 본 회의 선거는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로 한다.

02 전체회원의 과반수 투표에 의한 유효득표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03 단일후보 시 전체 회원의 과반수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제41조 (선거관리)

01 제31조의 내용에 따라, 당해연도 정·부학생회장과 집행부장 및 학년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한다.

02 선거 관리 업무는 선거 10일 전에 시작되며, 선거 7일 전에 시행 공고를 해야 한다.

03 선거 시행 공고에는 후보 자격 및 입후보 방법, 정확한 선거 일시와 선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04 운영위원회는 본 회칙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 업무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 (보궐선거)

01 정·부학생회장이 자격 상실 또는 사퇴 등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고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02 운영위원회는 01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5일 이내에 선거를 공고하고, 1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제43조 (재선거)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때, 단일후보의 과반수 득표가 안될 때 또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 및 사퇴 등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44조 (특별사항)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등 전체 학생 기구의 공동선거에 참여할 경우, 총학생회 또는 단과대학 학생회의 선거 관리를 받는다.

부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최초 제정시에는 학생총회의 제11조 02에 준하여 의결한다.

집행부 구성에 관한 세칙

제1조

문예창작학과 학생회칙 35조 6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01 총무부 : 본 회의 예산에 관해 출납을 관장하고, 예·결산에 관한 서류정리 및 보관하여 회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02 기획홍보부 : 학생회 사업의 전반적 기획과 실행을 책임지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한다. 본 회의를 창작하며 전반적인 홍보 활동을 학과 SNS 미디어를 활용하여 관리한다. 올바른 대학문화의 정립을 위해 각종 문화행사의 준비 및 홍보 등으로 회원들의 문화적 이해를 담당한다.

03 체육복지부 : 건전한 신체의 함양을 위해 각종 체육행사의 기획 및 시행을 담당한다. 학생들의 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해 학생회실을 정기 관리한다.

제2조

집행부의 각 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각 부원을 모집하거나 내부 조직을 개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회장의 인준을 거친다.

끝.